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이머징마켓 증권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비용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동종유형 총보수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연평균 수익률 및 수익률 변동성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운용전문 인력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및 운용 경력년수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투자등급 전략 혼합자산투자신탁[H](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42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	<p>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p> <p>②~③ (생략)</p> <p>④ (추가)</p>	<p>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u></p> <p style="margin-left: 20px;">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p> <p style="margin-left: 20px;">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u>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별도 보상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 style="margin-left: 20px;">1. 보상 금액: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 제 2 호의 대상 기간 일수 * 제 39 조제 3 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p> <p style="margin-left: 20px;">2. 대상 기간: 변경일로부터 6 개월간. 단, 남은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p>

		<p>⑤ (추가)</p>	<p><u>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u> <u>3. 지급방법: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u></p> <p><u>⑤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제 4 항 외 별도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법 190 조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u></p>
--	--	---------------	--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투자등급 전략 혼합자산투자신탁[H](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모펀드에 투자하는 다른 자펀드 해지에 따른 내용 삭제
-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자구 수정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운용 경력년수 등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 6. 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구조	모펀드에 투자하는 다른 자펀드 해지에 따른 내용 삭제	자투자신탁: 베어링 글로벌 투자등급 전략 혼합자산투자신탁[H](재간접형), <u>베어링 글로벌 투자등급 전략 혼합자산투자신탁[UH](재간접형), (삭제)</u>	자투자신탁: 베어링 글로벌 투자등급 전략 혼합자산투자신탁[H](재간접형),
제 2 부. 6. 다. 모자형 구조	모펀드에 투자하는 다른 자펀드 해지에 따른 내용 삭제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베어링 글로벌 투자등급 전략 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자투자신탁: <u>베어링 글로벌 투자등급 전략 혼합자산투자신탁[UH](재간접형), (삭제)</u>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 233 조에 의거한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이 <u>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은</u>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베어링 글로벌 투자등급 전략 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제 2 부. 11. 가. 매입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자구 수정	4)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4)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p>준수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은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법인의 경우 법인의 법적 실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u>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타인의 대리인인 경우, 매입신청인은, 당사자 본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매입신청인이 당사자 본인의 신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을 요청 받게 됩니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신원확인자료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의 매입신청은 거절됩니다.</u></p> <p><u>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환매대금의 지급이 자금세탁방지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지 받거나 의심되는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u></p>	<p>준수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은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법인의 경우 법인의 법적 실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u>판매회사로부터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해당 신청인의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는 환매대금의 지급이 자금세탁방지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지 받거나 의심되는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u></p>
<p>제 2 부.13.가. 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고</p>	<p>모펀드에 투자하는 다른 자펀드 해지에 따른 내용 삭제</p>	<p>자투자신탁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u>환율 변동의 영향의 차이로 환헤지형 자투자신탁과 환헤지하지 않는 자투자신탁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삭제)</u></p>	<p><u>(삭제)</u></p>
<p>제 4 부.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	<p>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p>	<p>생략</p>	<p>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FY 2019 기준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p>

집합투자기구신탁계약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글로벌 투자등급 전략 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신탁계약서
3. 정정사유:
 - 일부 자펀드 해지에 따른 자펀드 삭제
 -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3 조(집합 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	자펀드 삭제	③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으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베어링 글로벌 투자등급 전략 혼합자산투자신탁[H](재간접형) 2. 베어링 글로벌 투자등급 전략 혼합자산투자신탁[UH](재간접형) (삭제)	③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으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베어링 글로벌 투자등급 전략 혼합자산투자신탁[H](재간접형)
제 42 조(집 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추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서에 위반 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 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별도 보상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변경에

		<p>⑤ (추가)</p>	<p><u>의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u>1. 보상 금액: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 제 2 호의 대상 기간 일수 * 제 37 조제3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u></p> <p><u>2. 대상 기간: 변경일로부터 6 개월간. 단, 남은 신탁계약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u></p> <p><u>3. 지급방법: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u></p> <p><u>⑤ 제 4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제 4 항의 별도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법 190 조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u></p>
--	--	---------------	--